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 세부방법 설정 및 과·오지급 환수 권한 등을 부여하는 한편,

개방형직위등 보전 수당 가산금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의 교류임용 시에도 지급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이 직종”을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8조의8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9조제1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9 번호 2.다목부터 2)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지급대상란 2) 중 “달리하여”를 “달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간에”로 하며, 같은 표 번호 9.가목부터 3)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나)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및”으로 하며, 같은 표 번호 9.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같은 표 번호 10.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및 같은 표 번호 11.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장”을 각각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표 번호 11.차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장이”를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한다.

별표 14 비고 제2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간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을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u> <u>이하 같다)</u> 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방법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u>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u>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 --.
1. ~ 5.(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 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

③-----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
-----.

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⑨ (생략)

제10조(가족수당) ① ~ ⑧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⑦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⑧·⑨ (현행과 같음)

제10조(가족수당)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⑪ (생략)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⑥ (생략)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생 략)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3. (현행과 같음)

⑤ -----

-----.

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생략)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1.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 ①·② (생략)

③ 야간근무수당의 부담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방의회의 의장-----
--.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_____

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한다.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 ① ~ ③ (생략)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한다.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
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
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
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 (현
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⑩ (생략)

⑪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

의장-----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

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
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
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
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

[illegible]

⑫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현행
과 같음)

② _____

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

지
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및 -----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6